



공동주택 분쟁 조정 사례 모음

2023

△△아파트는 2018년 4월, 9월 일반관리비 및 경비비가 상승하였고 입주자인 신청인은 그 상승 요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인 입주자 대표회의에 확인과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이에 확인을 요청하며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 △△ 아파트는 2017.8월 입주한 아파트로서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한 경비용역업체 변경 및 기계 경비 시스템 도입으로 일반관리비 및 경비비 단가가 상승한 것이었고 상승 요인 설명 과정에서 당사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감정이 상하고 오해가 쌓인 부분이 있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리비 상승 요인에 대한 소명 사항을 바탕으로 신청인에 적극 설명하여 상승요인에 대한 신청인의 의문을 해소하는데 성공 하였다.

신청인에게는 관리비 상승요인의 사유를 이해하게 설명하고, 피신청인은 향후 단지 운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는 사전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